

마취총 산업용총
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소지 허가 신청서(법인)
 분사기 전자총격기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
			10일

신청인	법인	법인명	전화번호
		소재지	
	법인 대표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	주소	전화번호

재 질	
형 식	
제조국 및 회사명	
명칭 및 제조번호	
길 이	
종 량	
용 도	
수 량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각 1부(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·분사기 및 전자총격기 사용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
	2. 마취총, 산업용총, 가스발사총,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 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(이하 "폭발물분쇄총"이라 합니다),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량마다 각 1부) 3.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.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(마취총, 산업용총,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합니다) 5.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마취총, 산업용총,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합니다)	3,000원 × 수량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유의사항

- ◆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증명서
- 나.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양도·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서 등 양도·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처리절차

